

13. 비과세 · 감면대상에 대한 추정근거 규정 신설

1) 배 경

비영리사업자 또는 공공법인 등이 부동산 취득 후 유예기간(1년 또는 3년)이내에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· 등록세 등이 비과세 또는 감면되나, 비영리사업자 등이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취득 부동산을 유예기간내에 사용을 개시하여 일시적 · 형식적으로 사용하다가 매각 또는 타용도로 전용하더라도 이에 대한 추정 규정이 없어 공평과세를 저해²⁴⁾하고 있음에 따라 비영리사업자 또는 공공법인 등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유예기간내에 목적사업에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용일부터 2년이상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타용도 전용할 경우에는 비과세 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보완하였다.

2) 개정개요

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규정과 제5장 과세면제 및 경감 규정에서 취득 부동산의 사용일부터 기산하여 그 용도에 2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였다.

3) 개정조문 및 해설

지방세 비과세 · 감면규정중 추정규정이 신설된 조문은 지방세법 제107조 · 제127조 · 제261조 · 제266조 · 제268조 · 제271조 · 제272조 · 제273조 · 제276조 · 제277조 · 제278조 · 제279조 · 제280조 · 제286조 · 제287조 · 제288조제289조 등이다.

24) 상가건물을 취득한 후 유치원 또는 유아원용으로 약 1개월간 사용하다가 매각하거나 상가용으로 전용하는 경우에도 추징이 불가하므로 과세의 형평성을 상실하게 됨.